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5

발의연월일: 2021. 5. 18.

발 의 자 : 태영호 · 구자근 · 권명호

권성동 • 권영세 • 김정재

이종배 · 장제원 · 정찬민

정희용 · 조경태 · 허은아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 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 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1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2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2,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7,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7,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6억원 초과	807,000원+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주택 세율 특례)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이 <u>6억원</u> 이하인 주택에	12억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u>과세표준</u> <u>세 율</u>	<u>과세표준</u> <u>세 율</u>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2
6천만원 초과 30,000원+6천만원	6천만원 초과 12,000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u>이하</u> 의 1	<u>이하</u> <u>의 0.5</u>
1억5천만원 120,000원+1억5천만	1억5천만원 57,000원+1억5천만
초과 3억원 원초과금액의 1,000	초과 3억원 원초과금액의 1,000
<u>이하</u> <u>분의 2</u>	<u>이하</u> 분의 1
420,000원+3억원 초	3억원 초과 <u>207,000원+3억원 초</u>
3억원 초과 과금액의 1,000분의	<u> </u>
3.5	2
	807,000원+6억원 초
	6억원 초과 과금액의 1,000분의
	3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삭 제>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 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 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